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과정의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1., 2013.06.20., 2014.02.07., 2015.11.05., 2016.06.23., 2018.02.13., 2018.08.10., 2019.09.01., 2021.03.01., 2021.09.01.>

1. 경영학전공
2. “삭제” <2021.03.01.>
3. 리더십과코칭전공
4. AI빅데이터전공
5. “삭제” <2016.06.23.>
6. “삭제” <2021.03.01.>
7. “삭제” <2021.03.01.>
8. 국방경영전공
9. 디지털마케팅전공
10. 헬스케어매니지먼트전공

제4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학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석사과정 지원 자격이 있다.

②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경상계열 이외의 전공을 한 자는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본 대학원의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중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8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 ③ 편입학 전형의 전형방법, 지원 절차 등은 모집 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9조(위탁학생 및 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탁학생은 정부기관의 재직자 또는 경영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19.12.26.>

- ②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 ③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 증명서
4. 자기소개서
5.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생은 학칙 제3조 제5항 및 본 학사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개설된 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입학 자격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며,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 ③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연구과정 수료 후 석사과정에 입학한자에게는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을 6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직무, 교양, 전문분야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 마

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언제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자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개정 2012.03.01.>

② 입학 허가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13조(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① 학칙 제17조에 의한 휴학은 입영휴학, 가사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9.01.>

②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2.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창업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5. “삭제” <2018.09.01.>
<전문개정 2017.08.01.>
<제목개정 2017.08.01.>

제14조(일반휴학) “삭제” <2017.08.01.>

제14조의2(질병휴학) “삭제” <2017.08.01.>

제14조의3(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8.09.01.>

1. 가사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4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영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
3. 질병휴학 :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 이내
4. 임신·출산·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5. 창업휴학 :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일 이전의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반환한다.

③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9.01.>

1. 입영휴학
2. 질병휴학
3. 임신·출산·육아휴학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④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 수강자는 수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9.12.26., 2021.09.01.>

<본조신설 2017.08.01.>

제15조(입영휴학) “삭제” <2017.08.01.>

제16조(입영사유 소멸) ①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 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적 처리한다.

제17조(입영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입영 휴학하는 자는 입영휴학에 의한 학업성적처리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는 제외한다)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09.01.>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7.08.01.>

제19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01.17.>

④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4월 1일, 10월 1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19.12.26.>

제22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

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1.>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4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 내에 학칙 제34조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제25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본 대학원 전공 내에 한하며, 1차 학기 말 소정 기간 내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1.09.01.>

② 전공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 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수업연한은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수강하여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09.0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09.01.>

③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09.01.>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09.01.>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9.01.>

제26조의2(수업연한 단축) “삭제” <2021.09.01.>

제26조의3(학기운영) ① 본 대학원은 학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학기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봄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여름학기 : 여름방학 시작일부터 8주
3. 가을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4. 겨울학기 : 겨울방학 시작일부터 8주

② 제1항의 학기 중 여름학과 겨울학기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

는 자에 한하여 등록 후 이수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은 제외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학기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01.>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7조(등록) 재학생은 제26조 제1항에 정한 수업연한에 따라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01.>

제2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제31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 기간 내에 ON국민포털시스템(이하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2.03.01., 2021.09.01.>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1., 2021.09.01.>

③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 수강신청자는 수업연한 내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4.02.07., 2021.09.01.>

제29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재수강)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수강을 한 경우 기 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되,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6.06.23.>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제31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표 1]의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이수학점) ① 교과목의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이며, 총 33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별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기별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3.01., 2013.06.20., 2014.02.07., 2014.08.01., 2015.11.05., 2016.06.23., 2018.02.13., 2018.08.10., 2019.09.01., 2021.03.01., 2021.09.01.>

이수구분	이수학점						비고
전 공	경영	리더십과코칭	AI빅데이터	국방경영	헬스케어매 니지먼트	디지털마케팅	
전공선택	30	30	30	30	30	30	

③ “삭제” <2019.12.26.>

④ “삭제” <2016.06.23.>

⑤ 본 대학원의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복수의 학위종별을 운영하는 경영학전공, AI빅데이터전공의 석사학위 종류별 이수 요건에 맞는 교과목(이하 “지정 교과목”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해당 전공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개정 2021.09.01.>

제32조의2(계절학기 집중화과정) “삭제” <2021.09.01.>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3조(학점의 인정) 강의시간 4분의 1 이상 결석하지 아니하고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8.01.>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1.09.01.>

1. 봄학기: 9학점
2. 여름학기: 6학점
3. 가을학기: 9학점
4. 겨울학기: 6학점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09.01.>

제35조(과정 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대학원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B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석사과정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A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사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할 수 없다.

③ 위항의 경우 한 학기에 1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6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사전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 본 대학원 타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때의 인정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3.01.>

제37조(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삭제” <2017.06.01.>

③ 국내외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확인 및 원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의 1/2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입학학기 내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06.01.><개정 2019.12.26.>

제38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주임교수의 심의에 따라 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석 사
2학기	7학점 이내
3학기	15학점 이내

<개정 2017.12.28.>

제39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3절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교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1조(성적인정) 각 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은 C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출결부) ① 학생이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결석을 제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6.23., 2018.09.01.>

② 출석일수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출석 또한 포함된다.

제43조(성적 및 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은 학칙 제30조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한다.

②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출석 및 참여도 등을 적절한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I" 학점은 성적표상에 "I"로 표시하고, 담당교수는 다음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평가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F 처리된다. 다만, I의 학점부여는 B+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26.>

④ 기타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담당교수의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4장 종합시험 <개정 2018.09.01., 2019.12.26.>

제1절 외국어시험 “삭제” <2019.12.26.>

제45조(외국어시험) “삭제” <2019.12.26.>

제46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삭제” <2019.12.26.>

제47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삭제” <2019.12.26.>

제48조(출제기준 및 시험시간) “삭제” <2019.12.26.>

제2절 종합시험

제49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단, AI빅데이터전공은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자격증을 취득했을 시 종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6.06.23., 2019.09.01., 2019.12.26., 2020.09.01., 2021.03.01., 2021.09.01.>

1. 빅데이터분석기사
2. 데이터분석전문가
3. 데이터분석전문가

② 종합시험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경)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6.23., 2017.08.01., 2019.12.26.>

제50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1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6.20., 2019.12.26., 2021.09.01.>

제51조(출제기준 및 시험시간) ①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제반지식 및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3개 이상의 석사과정 전공선택과목 중 응시자가 3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8.10.>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 기간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험과목은 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53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54조(출제위원) ① 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12.26.>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개정 2019.12.26.>

제55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기간에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4절 전문보고서 <개정 2010.03.01.>

제56조(전문보고서) ①본 대학원에서는 전문보고서 작성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전문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0.03.01.>

② 전문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수료 및 학위수여 <개정 2019.12.26.>

제1절 수료

제56조의2(수료의 요건) 본 대학원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

에 대하여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6조의3(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0학점 이상이며, 그 성적의 평점 평균이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경영학전공, AI빅데이터전공자는 지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③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6조의4(수료자 확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예정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를 확정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6.>

제2절 학위수여

제57조(학위수여 요건)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2.03.01., 2019.12.26.>

1.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2. “삭제” <2019.12.26.>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면제받은 자
4.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자
5. 지정 교과목 이수 대상자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자

제58조(학위수여자 확정) ① 원장은 경영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② 경영학전공, AI빅데이터전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위수여대상자의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의 학위수여를 확정한다. <개정 2021.09.01.>

1. 석사학위 종류별 소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위수여
2. 석사학위 종류별 소정의 이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한 경우 2차 학기말에 최종 선택한 학위수여

<전문개정 2019.12.26.>

제59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12.26.>

②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수여학위 종류 및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01., 2013.06.20., 2014.02.07., 2015.11.05., 2016.06.23., 2018.02.13., 2018.08.10., 2019.09.01., 2019.12.26., 2021.03.01.>

과정명	석사 학위명		영문전공명
	국문	영문	
경영학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siness Administration
	뷰티경영학석사	Master of Beauty Business	
	건강관리학석사	Maste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리더십과코칭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Leadership and Coaching
AI빅데이터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국방경영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fense Management
디지털마케팅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siness Administration	Digital Marketing
헬스케어매니지먼트	건강관리학석사	Maste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Healthcare Management

제6장 장학금

제60조(지급기준)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1.>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3.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경영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4.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5. 기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

제61조(장학금 종류, 지급액 및 지급기간)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2조(장학금 수혜 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단,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01.>

제63조(장학금의 지급방침)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8.01.>

제64조(장학생 선정 절차) 장학생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8.01.>

제64조의2(장학금의 반환)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는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01.>

제7장 각 위원회

제1절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제65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 각 전공 주임교수와 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하되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2.03.01., 2014.09.01.>

제6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8.01.>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4.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제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정책 사항
8.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학에 필요한 사항

제6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경영대학원 장학위원회 “삭제” <2014.08.01.>

제68조(설치 및 구성) “삭제” <2014.08.01.>

제69조(기능) “삭제” <2014.08.01.>

제70조(회의) “삭제” <2014.08.01.>

제8장 기타 사항 “삭제” <2020.09.01.>

제71조(학적부 기재사항) “삭제” <2020.09.01.>

제72조(제증명 발급) “삭제” <2020.09.01.>

제73조(준용규정) “삭제” <2019.12.26.>

제9장 계약학과 <신설 2013.11.15.>

제74조(설치 및 학위과정)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대학원 학칙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1. 채용조건형 : 계약학도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재교육형 : 산업체가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75조(명칭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신규 설치·운영 시 정한다. <개정 2014.08.01., 2016.06.23., 2017.04.20.>

제76조(교과과정 편성 운영 및 이수학점)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하고,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7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

②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학생의 선발 절차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운영경비 및 수업료 납부) ① 계약학과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은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한다.

②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시 상호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학과의 학생이 재학 중 퇴직, 인사이동 등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거나 산업체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학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 제20조, 제21조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0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칙 제23조에 의한 정규 등록학기 이상으로 한다.

제81조(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도가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 폐지되는 경우 계약학도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의하되,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학도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구조조정,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6.23.>

제82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제반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학도의 학생은 계약학과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2조의2(준용규정) “삭제” <2020.09.01.>

제10장 기타 사항 <종전 제8장에서 이동 2020.09.01.>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2020.09.01.>

제84조(제증명 발급) ① 대학원 제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2020.09.01.>

제8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2조의2에서 이동 2020.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본 대학원의 학칙시행세칙 및 제규정,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학위논문 제출을 원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절차, 작성법, 심사 등은 구 경영대학원 학칙, 구 학위수여규정의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논문작성은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규정, 내규중 이 규정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37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사항은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45조 및 제 49조의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56조(전문보고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기 수료자 중 논문심사를 포기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점졸업 희망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졸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32조, 제59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4조 제4항, 제1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14조의3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09.01.>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전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5항, 제56조의3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9조 제1항 자격증 종류 및 제61조 관련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전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32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59조 제3항에 의해 폐지된 전공의 제적생은 구학칙에 의하여 입학 당시의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공별 교과과정표

<개정 2012.03.01., 2013.06.20., 2014.03.01., 2014.08.01., 2015.03.01., 2015.11.05., 2016.06.23., 2017.01.17., 2017.04.20., 2017.06.01., 2017.08.01., 2018.02.13., 2018.08.10., 2018.12.28., 2019.03.01., 2019.09.01., 2020.09.01., 2021.03.01., 2021.09.01.>

전공명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 과목	비고
경영학	전선	SCM&Logistics	3	3		
	전선	건강운동관리연구	3	3		
	전선	경영과회계	3	3		
	전선	경영전략	3	3		
	전선	경영정보관리	3	3		
	전선	경영특강	1.5	1.5		
	전선	경영학세미나	1.5	1.5		
	전선	경영학연구사례	3	3		
	전선	경제이슈분석	3	3		
	전선	고객관계관리	3	3		
	전선	공급사슬관리	3	3		
	전선	국제경영	3	3		
	전선	글로벌경영세미나	1.5	1.5		
	전선	글로벌비즈니스패권과미래경영	3	3		
	전선	글로벌비즈니스한국어	1.5	1.5		
	전선	글로벌프론티어비즈니스	1.5	1.5		
	전선	기업경영세미나	3	3		
	전선	기업전략세미나	3	3		
	전선	기업회계와재무분석	3	3		
	전선	디지털마케팅	1.5	1.5		
	전선	디지털헬스케어산업론	1.5	1.5		
	전선	리더십전략	3	3		
	전선	리더육성과조직개발	1.5	1.5		
	전선	마케팅	3	3		
	전선	마케팅관리론	3	3		
	전선	마케팅전략	1.5	1.5		
	전선	마케팅전략	3	3		
	전선	만성질환별운동처방	3	3		
	전선	메디컬에스테틱	3	3		
	전선	무역실무	3	3		
	전선	미용과향장	1.5	1.5		
	전선	바디&얼굴이미지연구	3	3		
	전선	뷰티건강상품개발	1.5	1.5		

전공명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 과목	비고
경영학	전선	뷰티건강서비스마케팅	1.5	1.5		
	전선	브랜드마케팅	1.5	1.5		
	전선	빅데이터경영	1.5	1.5		
	전선	생산관리	3	3		
	전선	생애주기별운동프로그램연구	1.5	1.5		
	전선	서비스경영	3	3		
	전선	서비스마케팅	3	3		
	전선	서비스운영관리	3	3		
	전선	소비자행동론	3	3		
	전선	소셜미디어마케팅	1.5	1.5		
	전선	소셜커머스	1.5	1.5		
	전선	숫자로보는경영	3	3		
	전선	스포츠물리치료학	1.5	1.5		
	전선	스포츠상해및테이핑적용실습	3	3		
	전선	스포츠헬스케어경영통계분석	3	3		
	전선	신경제와e-Business	3	3		
	전선	유통경영	1.5	1.5		
	전선	의사결정과협상	3	3		
	전선	인사조직의이해	1.5	1.5		
	전선	인적자원개발과성과관리	1.5	1.5		
	전선	인적자원관리	3	3		
	전선	인체반사학	3	3		
	전선	자연요법&에스테틱	3	3		
	전선	재무관리	1.5	1.5		
	전선	재무관리	3	3		
	전선	전략적경영	3	3		
	전선	정보기술과기업경영	3	3		
	전선	조직과환경	3	3		
	전선	조달관리	1.5	1.5		
	전선	조직행동론	1.5	1.5		
	전선	조직행동론	3	3		
	전선	중국경영경제의이해	1.5	1.5		
	전선	증권시장론	3	3		
	전선	체형관리연구	1.5	1.5		
	전선	치료적운동및테이핑적용실습	3	3		
	전선	클리니컬도수요법	3	3		
	전선	투자론	3	3		

전공명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 과목	비고
경영학	전선	항노화헬스케어	1.5	1.5		
	전선	현대경영과기업가정신	3	3		
	전선	현대금융의이해	3	3		
	전선	21세기경영학세미나	3	3		
리더십과코칭	전선	강점코칭	1.5	1.5		
	전선	경영전략	3	3		
	전선	경영학연구사례	3	3		
	전선	국제경영	3	3		
	전선	그룹코칭	3	3		
	전선	리더십개발방법론	1.5	1.5		
	전선	리더십개발을위한EI코칭	1.5	1.5		
	전선	리더십이론과모델	3	3		
	전선	리더십진단과코칭	1.5	1.5		
	전선	리더육성사례연구	1.5	1.5		
	전선	비즈니스코칭사례분석	1.5	1.5		
	전선	심화코칭	1.5	1.5		
	전선	의사결정과협상	3	3		
	전선	조직개발과리더십코칭	1.5	1.5		
	전선	조직과환경	3	3		
	전선	조직문화와리더십	1.5	1.5		
	전선	조직행동론	1.5	1.5		
	전선	커리어코칭	1.5	1.5		
	전선	코칭실습	1.5	1.5		
	전선	코칭심리학	3	3		
	전선	코칭의구조와프로세스	1.5	1.5		
	전선	코칭핵심역량1	1.5	1.5		
	전선	코칭핵심역량2	1.5	1.5		
	전선	팀리더십개발과팀코칭	3	3		
AI빅데이터	전선	AI빅데이터프로그래밍	3	3		
	전선	대화형AI	3	3		
	전선	데이터모델링과SQL	3	3		
	전선	데이터사이언스실무	1.5	1.5		
	전선	디지털경영	1.5	1.5		
	전선	딥러닝	3	3		
	전선	머신러닝	3	3		
	전선	비전AI	3	3		
	전선	빅데이터경영	1.5	1.5		

전공명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 과목	비고
AI빅데이터	전선	인공지능수학	1.5	1.5		
	전선	클라우드머신러닝	1.5	1.5		
	전선	텍스트데이터분석	3	3		
	전선	통계분석	3	3		
국방경영	전선	4차산업혁명과무인기	3	3		
	전선	국방경영과국가안보	3	3		
	전선	국방경영과리더십	1.5	1.5		
	전선	국방경영과인적자원관리	1.5	1.5		
	전선	국방자원관리	1.5	1.5		
	전선	군수관리개론	1.5	1.5		
	전선	디지털마케팅	1.5	1.5		
	전선	리더십전략	3	3		
	전선	마케팅전략	1.5	1.5		
	전선	무기체계의이해	3	3		
	전선	무인기시스템	3	3		
	전선	무인기운영개론	3	3		
	전선	무인무기체계	3	3		
	전선	무인항공모빌리티	3	3		
	전선	방위사업론1	3	3		
	전선	방위사업론2	1.5	1.5		
	전선	생산관리	3	3		
디지털마케팅	전선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5	1.5		
	전선	디지털마케팅의이해	1.5	1.5		
	전선	디지털컨텐츠기획	1.5	1.5		
	전선	SNS마케팅	1.5	1.5		
	전선	SNS컨텐츠제작과활용	1.5	1.5		
	전선	디지털컨텐츠카피라이팅	1.5	1.5		
	전선	디지털마케팅프로그래밍	1.5	1.5		
	전선	구글애널리틱스(GA)의이해및활용	3	3		
	전선	모바일앱마케팅	1.5	1.5		
	전선	그로스마케팅	1.5	1.5		
	전선	구글애즈광고	1.5	1.5		
	전선	검색엔진마케팅	1.5	1.5		
	전선	구글태그매니저(GTM) 활용	1.5	1.5		
	전선	SNS캠페인프로젝트	3	3		
	전선	구글애널리틱스(GA)를적용한디지털마케팅프로젝트	3	3		
	전선	디지털고객경험	1.5	1.5		

전공명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선수 과목	비고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전선	건강운동관리연구	3	3		
	전선	디지털헬스케어산업론	1.5	1.5		
	전선	마케팅	3	3		
	전선	만성질환별운동처방	3	3		
	전선	생애주기별운동프로그램연구	1.5	1.5		
	전선	스포츠물리치료학	1.5	1.5		
	전선	스포츠상해및테이핑적용실습	3	3		
	전선	인사조직의이해	1.5	1.5		
	전선	클리니컬도수요법	3	3		
	전선	항노화헬스케어	1.5	1.5		

※ 상기 과목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은 학기에 따라 전공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2]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개정 2014.03.01., 2016.06.23., 2017.01.17., 2017.04.20., 2018.02.13., 2019.09.01., 2021.03.01., 2021.09.01.>

장학종류	지 급 대 상	지급액	지급기간
조교장학금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대학원의 수업관련 업무 보조자	수업료 전액	당해학기
대내외 공로장학금	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이 있는 본원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지급함)	수업료 전액	수업연한
가족 장학금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이 본 대학원에 2인 이상 등록하는 경우 졸업시까지 지급함	수업료의 25% 지급	학기별
본교 교직원 장학금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본교 교직원	수업료의 75% 지급	수업연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본교 계약직원	수업료의 50% 지급	수업연한
특별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지급함	등록금의 일정액	당해학기
군위탁생 특별장학금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등록금 (입학금포함)의 50% 지급	수업연한
외국인 특별장학금	국제산학협력학생 유치사업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의 일정액	수업연한

[별표3]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신설 2020.09.01.> <개정 2021.09.01.>

장학금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봄,가을학기	여름,겨울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 개시일부터 15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기 개시일부터 15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학기 개시일에서 45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단, 해당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 전액 환수한다.